

●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-35호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 별표1의 제9호에 따라 고시 중인 「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」(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2023-19호, 2023.6.2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24년 06월 21일

국립환경과학원장

「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고시

「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」 [별표] 화학물질의 시험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[별표] 제2장 물리화학적 성질 시험분야 중 다음의 항을 개정한다.

개정	제1항	분배계수시험
----	-----	--------

[별표] 제3장 생태영향 시험분야 중 다음의 항을 신설한다.

신설	제17항	어류 RTgill-W1 세포주를 이용한 급성독성시험
	제18항	형질전환 <i>tg(cyp19a1b-GFP)</i> 제브라피쉬배아의 에스트로겐수용체를 통한 내분비활성물질 검출시험
	제19항	신속안드로젠활성교란리포터 (RADAR) 시험

[별표]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 중 다음의 항을 신설한다.

신설	제73항	생체 외 눈자극 및 심각한 눈손상시험(인체각막모델-유해성확인시험)
	제74항	심각한 눈손상 및 자극시험 (Defined Approaches)
	제75항	유전독성시험(포유류적혈구 pig-a 유전자돌연변이시험)

[별표]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 중 다음의 항을 개정한다.

개정	제33항	피부과민성시험(국소림프절시험, LLNA)
----	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(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3-19호, 2023.6.2.)에 의하여 시험 중인 시험은 이 고시에 의한 시험으로 본다.

[별표] 화학물질의 시험방법 게재는 생략합니다.

개정고시문은 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 (nier.go.kr) ‘법령정보 → 행정예고’ 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.